

3. 山林法施行令中改正令

대통령령 제15,517호 1997. 11. 29

주 요 골 자

- 가. 대체조림비의 환급사유를 납입후 그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환급가산금의 산정기준일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령 제24조의9)
- 나. 종전에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종·묘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여 구입하도록 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이 있는 종·묘의 경우에는 일을적인 가격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향토수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령 제46조의2)
- 다. 종전에는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함에 있어서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개발된 상태에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출·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한 경우에는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산출·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과다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령 제62조)
- 라. 종전에는 국유림안에서의 토석을 매각하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토석을 채취하지 아니하여도 토석매각대금은 전액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토석매각대금을 환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령 제82조).

- 마. 종전에는 석재가 집중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20헥타르이상인 지역을 채석단지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채석단지지정요건에 해당되는 면적이 너무 넓어 채석단지지정제도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앞으로는 면적요건을 20헥타르 이상에서 10헥타르이상으로 감축·완화함으로써 채석단지지정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령 제91조의5)
- 바.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개발의 대상사업을 임목유종에 관한 연구로 정하는 등 산림에 관한 기술연구개발사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7조)

개정이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임야매매증명제도를 폐지하고, 대체조림비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산림의 조화로운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산림법이 개정(1997. 4. 10, 법률 제5323조)됨에 따라 대체조임비의 환종에 관한 절하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사용승인
또는 매각에 관한 규정
 5. 국유림과 공유림·사유림과의 교환 또
는 공유림·사유림의 매수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단서중 “제1호·제2호의3·제4호·제7호 및 제28호”를 “제2호의3·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호의2중 “부과·징수권”을 “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의3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1호중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불요존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 및 신규취득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결정하는 권한”으로 하고, 동항제28호 및 제29호를 각각 삭제한다.

2의3.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의 조성공사 또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승인권

7.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에 관한 검사와 표시를 변경하게 하거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제4조제3항제5호중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관한 신고수리”를 “산림 또는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의 허가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11월 말”을 “10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월이내”를 “60일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10월 31일”을 각각 “8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45일 이내에”를 “90일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고등학교의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업기술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만, 제주도 및 도서지역에 배치하는 임업지도원은 당해 지역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중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를 “임업진흥촉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가”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임도의 시설) ①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도를 시설하게 하는 경우에 1급임도의 유효너비는 4미터이하로 시설하게 하여야 하고, 2급임도의 유효너비는 3미터이하로 시설하게 하여야 한다.

②임도를 시공하는 자는 임도시설공사현장에 산림토목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소의 임도시설거리가 5킬로미터미만인 경우로서 동일한 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제주도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2개소의 임도시설공사현장에 1인의 산림토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속성수림”을 “속성수림·관상수”로 한다.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지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초지가 산림으로 전환된 경우
2. 산림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임지별 구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의5제2항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임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 전용하는 경우

가. 지하자원의 개발 또는 석재의 채취를 위한 시추시설

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7.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화장장·납골당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중 “농림어업용 시설”을 “부지면적 11만제곱미터미만의 농림어업용 시설”로 하고, 동호마목중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을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목재를 가공하는 시설”로 하며, 동호사목을 삭제하고—, 동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자목을 파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사회복지시설·병원·근로자복지시설·농어촌휴양지시설 또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 종교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차.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차.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의 단서중 “산림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마목을 바목으로 마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협의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이용 또는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전임지를 특정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의2의 제목 “(대체조림비등의 납입의무면제대상자등)”을 “(대체조림비의 감면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를 전액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등과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농로의 설치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산림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등 조성계획에 의한 공공편익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및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4. 비영리법인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에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7.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한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경우
8.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과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송전·변전 및 배전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경우
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경우
10.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11.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공공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12.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3.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공공시설용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7.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8. 저수지·소류지·수로·농지개량 등 의 시설용지(수몰대상자를 포함한다)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19.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 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20. 광업법에 의한 채광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경우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3. 지역주민이 소득증대와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체육 및 편의시설로서 5천제곱미터미만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사립도서관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25. 제2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6.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립과학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28.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2호나목 내지 라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의 100분의50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제1항제2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를 건설하는 경우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을 하는 경우

3.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 · 지방공단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조제2호마목 · 사목 · 아목 · 자목 · 차목 · 카목 또는 타목의 시설과 동조제3호나목 · 다목 · 타목 · 파목 · 하목 또는 머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4조의3제1호중 “받거나”를 “받고자 하거나”로, “받은 경우”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받거나”를 “받고자 하거나”로, “신고를 한”을 “신고하는”으로, “받은”을 “받고자 하는”으로, “신고한”을 “신고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받은”을 “받고자 하는”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관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조림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부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제24조의5제1항 본문중 “법 제20조의3제1항”을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100분의 70이상인 사업“을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사업“으로 한다.
-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림비가 전액 면제되는 자
- 제24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중 “받거나”를 “받고자 하거나”로, “받은”을 각각 “받고자 하는”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받은”을 “받고자 하는”으로, “산림형질변경허가면적”을 “산림형질변경허가면적”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받은”을 “받고자 하는”으로 한다.
- ①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의 금액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24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
의 제1항제1호·제12호·제1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11
호·제12호의2·제13호 내지 제18호에
서 정하는 비율

제24조의8의 제목 “(공시지가 적용기준)”을
“(개별공시지가의 적용기준)”으로 하고, 동
조 본문중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해당 산림의 공시지가가 없
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
별토지가격)”를 “법 제20조의3제3항의 규
정에 의한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로,
“공시지가 또는 개별토지가격을”을 “해당
산림의 개별공시지가를”로 한다.

제24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9(대체조림비의 환급) ①법 제20
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착오로 납입한 경우

2. 납입후 그 부과가 취소된 경우

②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대체조림비로 납
입한 금액중 법 제20조의2제2항 각호의 규
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대체조림비 납입자
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조
림비환급금을 통지하는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
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
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조림비환급금
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법 제90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취소일
2. 법 제20조의2제1항 각호의 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조
림비의 납입일
3.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
유로 인하여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산림
의 면적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
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변경결
정일
4. 납입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대체조림
비가 2회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대체조림비
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
지 소급하여 계산한 각 납입일로 한다.

제24조의10제1항중 “법 제20조의3제6항”을 “법 제20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24조의11제4항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과오납금의 반환통지”를 “환급통지”로 한다.

제24조의12중 “산림의 전용현황과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산림의 전용현황”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산림의 개발과 임업진흥”을 “산림의 개발”로 한다.

제28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업진흥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업경영을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제45조제1항제2호가목중 “소유하고”를 “소유하거나 사용·수익권이 있는 자로서”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험·연구 또는 종·묘시범사업을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 있는 산림용 종·묘로서 산림청장이 가격을 결정·고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임산물의 품질등의 검사)”를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검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규격 또는 품질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규격 또는 품질등”으로,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품질등”을 “규격 또는 품질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6항”으로 한다.

제48조의3의 제목 “(임산물의 판매금지·폐기명령등)”을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산림청장은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등의 표시변경·판매금지·이동금지 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림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의 생산·판매·이동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목구조기술자) ①법 제2조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관리기술자 및 목구조시공기술자를 말한다.

②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및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구조관리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에서 목구조관리과정을 이수한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임산가공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목조주택 등 목구조건축업체에서 목구조시공기술자로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임업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목구조시공기술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제4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건축업체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업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제49조의3(목구조기술자양성 등)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

자의 양성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소속 훈련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구조기술자양성기관의 목구조관리과정 또는 목구조시공과정별로 개설하여야 하는 과목의 종류 및 교육기간 기타 목구조기술자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①법 제5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5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제2종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임야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버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저장시설
3. 농업인등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5조(천연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①법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국도·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을 말한다.
- ②법 제6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57조제2항중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재산으로”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재산관리계정중 산림청소판 임야로”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호중 “산화”를 “산불”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5. 어린나무가꾸기
- 제60조의2중 “그 국유림내에서 공동으로 방목하는 것”을 “그 국유림안에서 방목하는 것”으로 한다.
-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국유림의 대부는 불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국유림의 사용허가는 요존국유림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축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초지법

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종축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는 축산법에 의한 종축업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며, 광업을 위한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광업법에 의하여 텁광계획의 신고를 하였거나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61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직접 화장장·납골당 또는 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2조제1항 본문중 “임야의 임야가격”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으로, “월할”을 “월할 또는 일할”로 하고, 동항제1호 중 “목축·조림용”을 “목축·종축·조림”으로, “100분의 1”을 “100분의 1이상”으로 하고며, 동항제2호중 “공의사업용·청소년수련시설용·광업용 또는 제조업용”을 “공의사업용·학교용지·청소년수련시설용·광업용·제조업용·화장장용 또는 납골당용”으로, “100분의5를 ”100분의 5이상“으로, “임야가격(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임야가격을 말한다)“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rrur(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연도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임야가격”을 각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대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매년 결정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개발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2. 제1호외의 대부·사용허가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 다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느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거나 인근에 대부·사용허가지와 유사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제1호중 “조립용 목적”을 “조립·광업목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연장”을 “갱신”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중 “평균홍고직경”을 “평균가슴높이 지름”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단서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국유림안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고속도로”를 “고속국도”로 하며, 동항제6호중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토석을 매각받은 자가 토석을 굴취·채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납된 대금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6조중 “유실수”를 “유실수·과수 및 관상수”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과수재배비용”을 “과수재배비용 또는 관상수생산비용”으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제3호중 “제79조제2항제3호 단서”를 “제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석재가공공장 등 채석에 의한 산물을

이용하여 직접 가공·판매하는 공장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지역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동호단서”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7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부터 100미터이내인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공장의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91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술사법에 의하여 광업자원부문 또는 응용이학(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분야에 한한다)부문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제91조의3제4항제1호 중 “채석허가 신청면적”을 “채석허가신청면적(채석하고 있는 구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채석허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1조의4의제2항 본문중 “산림의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를 “산림재해나 그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석중단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변산림 및 주민생활에 대한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사항
4. 피해의 방지 또는 복구와 관련된 채석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91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방지 또는 복구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채석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의5의 제목 “(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을 “(채석단지의 지정·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20헥타르이상(쇄골재용 채석단지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을 “10헥타르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중단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방지 또는 복구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채석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의5의 제목 “(채석단지의 지정·변경 및 해제등)”을 “(채석단지의 지정·관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20헥타르이상(쇄골재용 채석단지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을 “10헥타르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림청장은 법 제90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 평가결과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의 관계
3. 개발관리에 따른 난이도
4. 인근 주민에 미치는 이해관계(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된 것을 말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6. 채석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7. 기타 채석단지의 지정에 대한 의견

6 · 제3항 및 법 제9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채석단지를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그 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소유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시장 ·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채석단지의 운영실적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이를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채석단지를 지정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1조의6중 “법 제90조의4제5항”을 “법 제90조의4제6항”으로, “산림청장이”를 “산림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로 한다.

제91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7(토사채취허가의 제한 등) 법 제9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의 굴취 · 채취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9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법 제90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8(복구비용의 예치면제 등) ①법 제9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형질변경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2. 농업인등 또는 산림소유자가 1만제곱미터이내의 구역에서 임목의 벌채 또는 임지의 개간을 하지 아니하고 산체 · 약초 · 특용작물의 재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임도(유실수재배지안의 작업로를 포함한다) 또는 방화선 등 산림경영 · 관리시설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9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채광 또는 채석목적으로 형질변경한 지역중 경사 15도미만의 지역으로서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93조제1항 본문중 “법 제94조제1항”을 “법 제94조”로, “할 수 있다”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의”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할 수 있다”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토석 100세제곱미터이상을 굴착하거나 면적 330제곱미터이상의 산림을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와 당해 장비의 사용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에 미달하는 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자동차운전면허, 해기사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제1항 본문중 “신고를 하고”를 “허가를 받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신고를 받은 때”를 “허가를 한 때”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불놓기 신고를 한 자”를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불놓기 신고를 한”을 각각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95조의2중 “법 제102조의2”를 “법 제102조의3”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산림개발기금 및 재정지원”

을 “재정지원”으로 한다.

제98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 · 제7호 ·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3. 임도시설의 조성(보수를 포함한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하고,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기술연구개발

제108조의3(기술연구개발의 범위) 법 제114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연구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을 말한다.

1. 산림자원 및 산림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2. 임산공학에 관한 연구개발
3. 산림생물에 관한 연구개발
4. 산림경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산림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6. 임목육종에 관한 연구개발
7. 임업경제 및 정책 · 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제108조의4(공동연구대상사업) ①법 제1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업분야의 신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2. 임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상호 기술 협력을 통한 실용화연구개발사업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연구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모하여야 한다.

제108조의5(공동연구개발협약의 체결) ① 산림청장은 제10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과제를 공동연구로 수행하게 할 경우 법 제1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체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연구개발과제의 명칭·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출연시기·방법과 출연금의 비율
3.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
8.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③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동연구기관의 장 및 공동연구개발의 연구책임자는 매회계 연도가 종료하거나 당해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3월이내에 출연금집행실적보고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방법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6(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1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가 당해 공동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수출진흥 또는 수입대체 등 국내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8조의7(출원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① 법 제1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인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8조의 6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8조의8(계약기간) 제108조의6 및 제

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8조의9(기술사용료의 산정) 제108조의 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 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10(보상금의 지급) ①산림청장은 유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기술 사용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산정방법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일 때

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제108조의11(특허청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승계시 계약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제108조의6 및 제108조의7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및 직무발명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109조 내지 제11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2의2제1항중 “법 제125조제6항”을 “법 제125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제2조(영림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도에 영림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산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방법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이를 적용하되, 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1997년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6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1997년도분 대부료 또는 사용료로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조정하여 차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4조(보전임지의 전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임지의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9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일구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9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타당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5제5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회보